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5 선고 2021재가단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30500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0. 5 선고 2021재가단11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A

피고(재심피고)1. B

2.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 2021. 10. 5.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514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22. 접수 제17039, 17040, 17041, 170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19. 10. 10.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5145호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2. 13.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20나3050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9.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제기되어¹⁾ 부적법하고, 이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를 적용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진우

별지

1) 이 사건 재심소장에 재심대상의 판결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재나13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7. 21. 재심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21. 8. 2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의사를 '이 사건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의 판결로 지정하였다'라고 보기 어렵다.